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4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7일, 박양숙의원(찬성의원 19명)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박양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 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음.

-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원조프로그램만으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로 인식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정무역이 원조나 기부보다 효과적인 저개발국가 지원 방법임을 인식해 공정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서울시가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의 수도이자 글로벌 경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 안 제5조).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10조 ~ 안 제14조).
-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 안 제20조).
-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공정무역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2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서울시(이하 “시”)의 주요시책으로 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나. 공정무역의 개념과 현황

-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은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대화와 투명성·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무역 파트너십으로 정의함¹⁾.

- 공정무역은 1946년 미국의 시민단체 텐사우전드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가 푸에르토리코산 손바느질 상품을 구입한 것을 기원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에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설립됐고, 2002년부터는 커피, 차, 바나나 등 농산물에 대한 공정무역 상품 인증 업무를 시작하였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럽과 북미, 호주 등을 중심으로 4천여개 공정무역 가게가 영업중이고, 12만 2,500여개의 슈퍼마켓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중이며 매출액은 연간 30억 유로를 상회함²⁾.
- 국내에서는 2003년 9월 '아름다운가게'가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수공예품을 팔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공정무역가게 울림' 등 7개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 현재 약 78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공정무역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피 제품의 매출이 국내 커피시장 규모의 약 0.05%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점유나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미진함(참고자료).

1) 2009년 1월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 Fair 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정무역 원칙 헌장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반한 무역 파트너십으로써, 보다 평등한 국제무역을 추구한다. 특히 남반구의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소비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 공정무역 단체들은 생산자 지원, 인지 강화, 그리고 기존 국제 무역 규칙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로 정의됨.

2) 2004년 8억 유로에 그치던 공정무역 시장규모는 2009년 31억 유로(약 4조 5천억원)로 급성장하고 있음(서울시 내부자료).

다. 공정무역 추진에 따른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5조~제9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 지원과 활성화 대책 추진,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초기 단계에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서울시와 시장에게 이와 관련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됨.
- 다만, 현재 국내 공정무역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이를 다루는 업체가 소수인 상황에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성과 등 사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됨.

라. 공정무역위원회(안 제10조~제14조)

-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공정무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자문, 지원단체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지원단체 선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공정무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공정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기준이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사실상 공정무역과 관련한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각 자치구도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 선정이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마.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안 제17조~제20조)

- 시는 공정무역 제품의 유통 활성화와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단체 등에 대한 구매 증진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공정무역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시가 관련 시장과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공정무역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관리와 관련한 국내 인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혹은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커피 등에 한정된 제품 종류의 다양화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바. 서울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안 제21조~제23조)

-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공정무역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이 이해가 부족하고 유통규모가 영세한 상황을 고려해 각종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센터의 역할은 공정무역 제품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이어야 하며 국내 공정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협의체인 (사)한국공정무역연합 등이 이미 공정무역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캠페인, 국제연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종합의견

- 공정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상품거래와 비교할 때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저변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고, 법적 기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인식도 낮은 상황임.
- 이에 시는 지난 5월 서울을 공정무역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은 이런 시의 구상에 법·제도적인 근거를 제공해 공정무역 제품 거래 활성화와 시민 관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

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매년 공정무역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받은 공정무역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 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기여한 시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8조(교육 훈련)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 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공정무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교육·홍보·전파
5.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무역 판매마크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 (이하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판매마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